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2-1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외 소재 부동산
의뢰인	자갈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평가서 번 호	대화 02-2503-4-0019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개작(改作)·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30번길 30전문건설회관 6층
대표전화 : (051)632-3300 FAX : (051)632-0900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한동욱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지사장 김기대 (서명 또는 인)

한동욱



감정평가액	삼억오천일백만원정 (₩351,000,000.-)					
의뢰인	자갈치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제출처	자갈치신용협동조합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신상일 (수탁자 : 국제자산신탁(주))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기타 참고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		2025. 03. 27		2025. 03. 27	2025.03.27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5개호	구분건물	5개호	-	351,000,000
	합계					₩351,000,000.-
		이	하	여	백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손인석					

손인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하남119안전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칭 : 영진빌리지 2차)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외 4개 호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현황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2-1번지 (현칭 : 영진빌리지 2차)

이용상황	공동주택	사용승인일자	2017.06.14
건물의 구조 및 층수/ 시공 및 관리상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 보통	배후지의 상태 및 규모	보통/ 16세대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 타	-

기호	구 분	전유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지분(㎡)	전용율(%)
가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46.298	18.2782	64.5762	42.83	71.70
나	제1호동 제3층 제301호	46.4564	18.2941	64.7505	42.97	71.75
다	제1호동 제3층 제302호	46.4564	18.2941	64.7505	42.97	71.75
라	제3호동 제1층 제101호	46.2980	18.2782	64.5762	42.83	71.70
마	제3호동 제3층 제302호	46.4564	18.2941	64.7505	42.97	71.7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년 03월 27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3월 27일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 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3. 특이 및 유의 사항

가. 본건 기호1) ~ 5) 구분건물은 현장조사시 본건 평가선례(공매, 기준시점 2024.06.27) 내 호별배치도, 건축물현황도, 관련공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치확인 하였으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됨.

나.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거래관행상 일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 행 요청에 의거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의 가격을 배분할 경우의 금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 부가하였음.

다. 본건 구분건물 중 기호(가~다)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내부확인 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공부(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용도),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가. 구분소유권의 평가방법은

- ①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유사거래사례를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보정·비교하여 구분소유권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② 대상 구분소유권이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 ③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1동 전체의 가격을 구한 후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 대상구분소유권에 배분하는 방법 등이 있음.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평가방법과 합리성 검토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대상물건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원가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적절한 수익 및 환원율의 파악이 어려워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한 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3. 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 사항

없 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가. 평가 개요

대상물건은 위치, 부근의 상황, 규모,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 인근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1)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경상남도 밀양시)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 분	거래사례 1.	거래사례 2.	거래사례 3.	거래사례 4.
소재지·건물명칭·동	삼랑진읍 송지리 412-7 삼랑진블레스빌 제101동	삼랑진읍 송지리 412-7 삼랑진블레스빌 제103동	삼랑진읍 송지리 265-28 어울림 제에이동	하남읍 수산리 142-2 (현칭 : 영진빌리지 1차)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층·호수	제3층 제302호	제2층 제202호	제2층 제102호 (1층 필로티)	제2층 제203호
사용승인일	2012.12.10	2013.03.28	2016.05.23	2016.05.23
전유면적 (㎡)	65.7537	68.0607	69.35	84.57
거래가액	125,000,000	120,000,000	127,000,000	130,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	@1,900,000	@1,760,000	@1,830,000	@1,540,000
거래시점	2022.04.19	2021.12.23	2022.02.19	2020.07.29
비 고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유사 물건의 평가선례

(경상남도 밀양시)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구 분	평가선례 1.	평가선례 2.	평가선례 3.
소재지 · 건물명칭	하남읍 수산리 142-1 (현칭 : 영진빌리지 2차)	하남읍 수산리 427-9 외 (현칭 : 은하빌라)	삼랑진읍 송지리 442-2 가경쉐르빌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동 · 층 · 호수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외 14개호	제5층 제501호	제3층 제302호
사용승인일	2017.06.14	2015.09.22	2020.05.11
전유면적(㎡)	총 감정평가금액 ₩1,265,000,000 본건 대상구분건물 평가금액 및 단가 ▪ 1호동 201 : 70,000,000 (@1,523,000) ▪ 1호동 301 : 72,000,000 (@1,570,000) ▪ 1호동 302 : 72,000,000 (@1,570,000) ▪ 1호동 401 : 111,000,000 (@1,681,000) ▪ 2호동 201 : 70,000,000 (@1,523,000) ▪ 2호동 202 : 70,000,000 (@1,523,000) ▪ 2호동 301 : 72,000,000 (@1,570,000) ▪ 2호동 302 : 72,000,000 (@1,570,000) ▪ 2호동 401 : 111,000,000 (@1,681,000) ▪ 3호동 101 : 65,000,000 (@1,414,000) ▪ 3호동 201 : 70,000,000 (@1,523,000) ▪ 3호동 202 : 70,000,000 (@1,523,000) ▪ 3호동 301 : 72,000,000 (@1,570,000) ▪ 3호동 302 : 72,000,000 (@1,570,000) ▪ 3호동 401 : 111,000,000 (@1,681,000)	56.5125	65.066375
감정평가액		124,000,000	152,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		@2,190,000	@2,340,000
기준시점	2024.06.27	2023.03.20	2023.03.22
평가목적	공매	법원경매	법원경매
비 고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정상가격 수준 등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가격수준은 1,500,000원/㎡ ~ 1,600,000원/㎡ (전유면적)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4) 최근 1년간 경매 낙찰가율

<자료출처: 지지옥션>

용 도	소재지	기간	낙찰건수	낙찰가율(%)	비 고
다세대주택	경상남도 밀양시	최근1년	4건	49.1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
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 1>을 선정하였음.

(경상남도 밀양시)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 분	거래사례 1.	비 고
소재지 · 건물명칭	삼량진읍 송지리 412-7 삼량진블레스빌 제101동	별지 “위치도” 표시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 · 호수	제3층 제302호	
사용승인일	2012.12.10	
전유면적(m ²)	65.7537	
거래가액	125,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m ²)	@1,900,000	
거래시점	2022.04.19	
비 고	다세대주택	

[illegibl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시점수정치

“거래사례 1”의 거래시점(2022. 03.) 적용 지수	101.1
대상 물건의 기준시점(2025. 02.) 적용 지수	96.1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 지수	$96.1 / 101.1 \approx \mathbf{0.95054}$

※ 거래시점 : 2022.04.19, 2022년 03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5.03.27. 2025년 02월 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가격형성요인) 비교

대상물건 기호 (가 ~ 마) / 거래사례 (1)과 비교

요 인	세 항 목	비 고	격차율
단지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0.83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사용승인일자: 대상물건-2017.06.14, 거래사례- 2012.12.10)에서 우세함.	1.04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후첨 '호별요인표' 참고	-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등함.	1.00
격차율 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구분건물 (가 ~ 마) 호별요인 비교

기호	층별효용	향별효용	위치별효용	전유면적 등	내부평면방식 (개별테라스)	간선도로 등 소음	격차율
가	0.97	1.00	1.00	1.00	1.00	1.00	0.970
나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라	0.90	1.00	1.00	1.00	1.00	1.00	0.900
마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 구분건물 (가 ~ 마)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호	구 분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누계
가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0.83	1.04	0.970	1.00	0.837
나	제1호동 제3층 제301호	0.83	1.04	1.000	1.00	0.863
다	제1호동 제3층 제302호	0.83	1.04	1.000	1.00	0.863
라	제3호동 제1층 제101호	0.83	1.04	0.900	1.00	0.777
마	제3호동 제3층 제302호	0.83	1.04	1.000	1.00	0.86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단가 결정

산식 =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호	구 분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가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1,900,000	1.00	0.95054	0.837	1,511,644	1,512,000	-
나	제1호동 제3층 제301호	1,900,000	1.00	0.95054	0.863	1,558,600	1,559,000	-
다	제1호동 제3층 제302호	1,900,000	1.00	0.95054	0.863	1,558,600	1,559,000	-
라	제3호동 제1층 제101호	1,900,000	1.00	0.95054	0.777	1,403,282	1,403,000	-
마	제3호동 제3층 제302호	1,900,000	1.00	0.95054	0.863	1,558,600	1,559,000	-

(나) 시산가액 결정

산식 = 면적 × 단가						
기호	구 분	전유면적(㎡)	단가(원/㎡)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고
가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46.298	1,512,000	70,002,576	70,000,000	-
나	제1호동 제3층 제301호	46.4564	1,559,000	72,425,527.6	72,000,000	-
다	제1호동 제3층 제302호	46.4564	1,559,000	72,425,527.6	72,000,000	-
라	제3호동 제1층 제101호	46.298	1,403,000	64,956,094	65,000,000	-
마	제3호동 제3층 제302호	46.4564	1,559,000	72,425,527.6	72,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기 호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가~마)	351,000,000	-

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물건의 제반 입지조건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방매사례, 평가선례의 가격,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구 분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46.298	70,000,000	다세대주택
나	제1호동 제3층 제301호	46.4564	72,000,000	다세대주택
다	제1호동 제3층 제302호	46.4564	72,000,000	다세대주택
라	제3호동 제1층 제101호	46.298	65,000,000	다세대주택
마	제3호동 제3층 제302호	46.4564	72,000,000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토지·건물 배분비율 결정

기호	구 분	감정평가액(원)	토지(원)	건물(원)
가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70,000,000	21,000,000	49,000,000
나	제1호동 제3층 제301호	72,000,000	21,600,000	50,400,000
다	제1호동 제3층 제302호	72,000,000	21,600,000	50,400,000
라	제3호동 제1층 제101호	65,000,000	19,500,000	45,500,000
마	제3호동 제3층 제302호	72,000,000	21,600,000	50,400,000
-	합계	351,000,000	105,300,000	245,7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1 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2-1 1호동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현칭) 영진빌리지 2차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평4길 18							
	동소	142-1	답		742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1호	46.298	46.298	70,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상 전유면적+ 공용면적= 64.5762㎡)
				1.소유권대지권	46.298	46.298		
				802.1732	802.1732			
						토지 건물	배분내역 21,000,000 49,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나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1호	46.4564	46.4564	72,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상 전유면적+ 공용면적= 64.7505㎡)				
					46.464	46.464						
					-----	-----						
					802.1732	802.1732						
다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2호		46.4564	46.4564	72,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상 전유면적+ 공용면적= 64.7505㎡)
									46.4564	46.4564		
									-----	-----		
									802.1732	802.1732		
		배분내역										
		토지					21,600,000					
		건물					50,400,000					
		토지					21,600,000					
		건물		50,4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1 라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2-1 3호동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현청) 영진빌리지 2차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평4길 18							
	동소	142-1	답		742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01호	46.298	46.298	65,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상 전유면적+ 공용면적= 64.5762㎡)
				1.소유권대지권	46.298	46.298		
					-----	-----		
				802.1732	802.1732			
						토지 건물	배분내역 19,500,000 45,5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금 액	
마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3층 제302호 1.소유권대지권	46.4564	46.4564	72,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등본상 전유면적+ 공용면적= 64.7505㎡)
					46.4564	46.4564		
					-----	-----		
					802.1732	802.1732	배분내역 토지 21,600,000 건물 50,400,000	
	합 계						₩351,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하남119안전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나지상태의 토지 및 농지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제반입지조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구분	내용	비고
구조 / 규모 등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외 4개호로서,	-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
내벽	벽지 마감.	기호 (가 ~ 다) 폐문·부재
바닥	비닐시트 마감.	기호 (가 ~ 다) 폐문·부재
창호	샤시창 구조임.	-
관리상태	2017년 06월 14일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현상은 보통임.	-

4. 이용상태

구분	내용	비고
가) ~ 마)	다세대주택 등의 용도임.	기호 (가 ~ 다) 폐문·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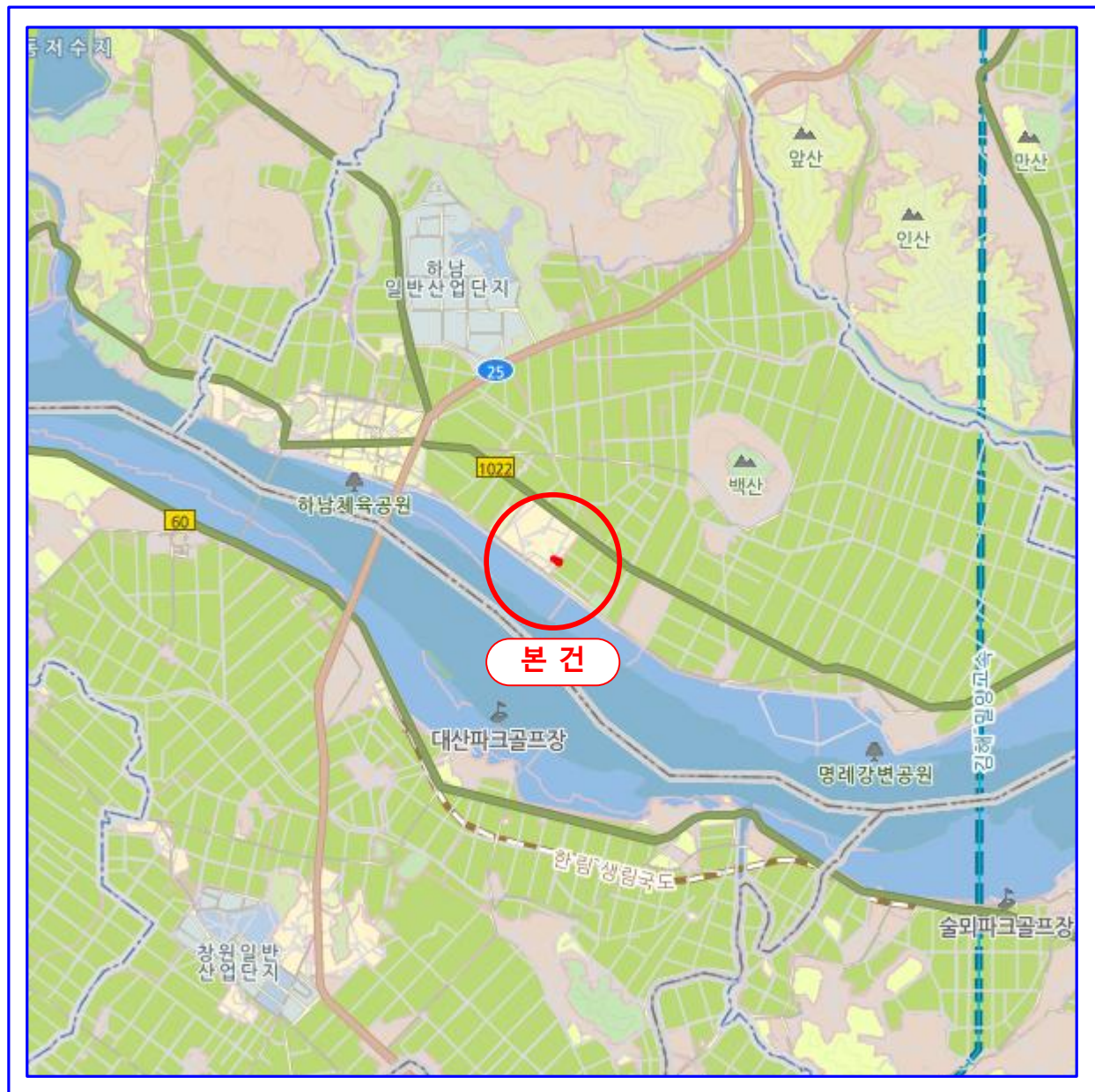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5. 부대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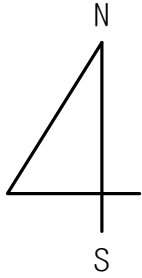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위생·급배수설비	유	-
난방설비	유	-
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	-
승강기설비	유	-
주차장설비	유	-
기타설비	-	-

6. 기 타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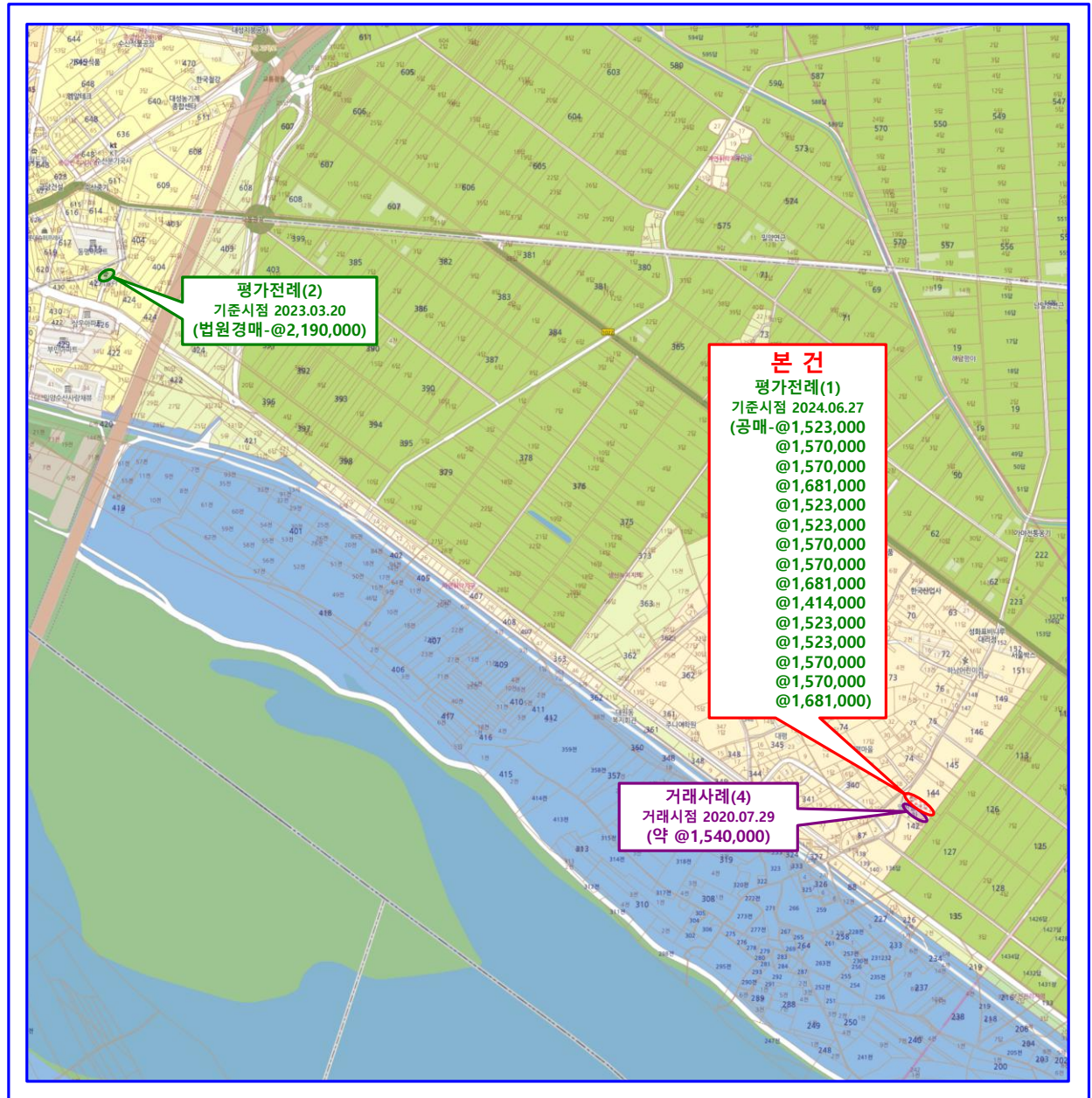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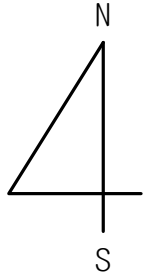
본건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2-1번지

[본 건 명 : 현청 '영진빌리지2차'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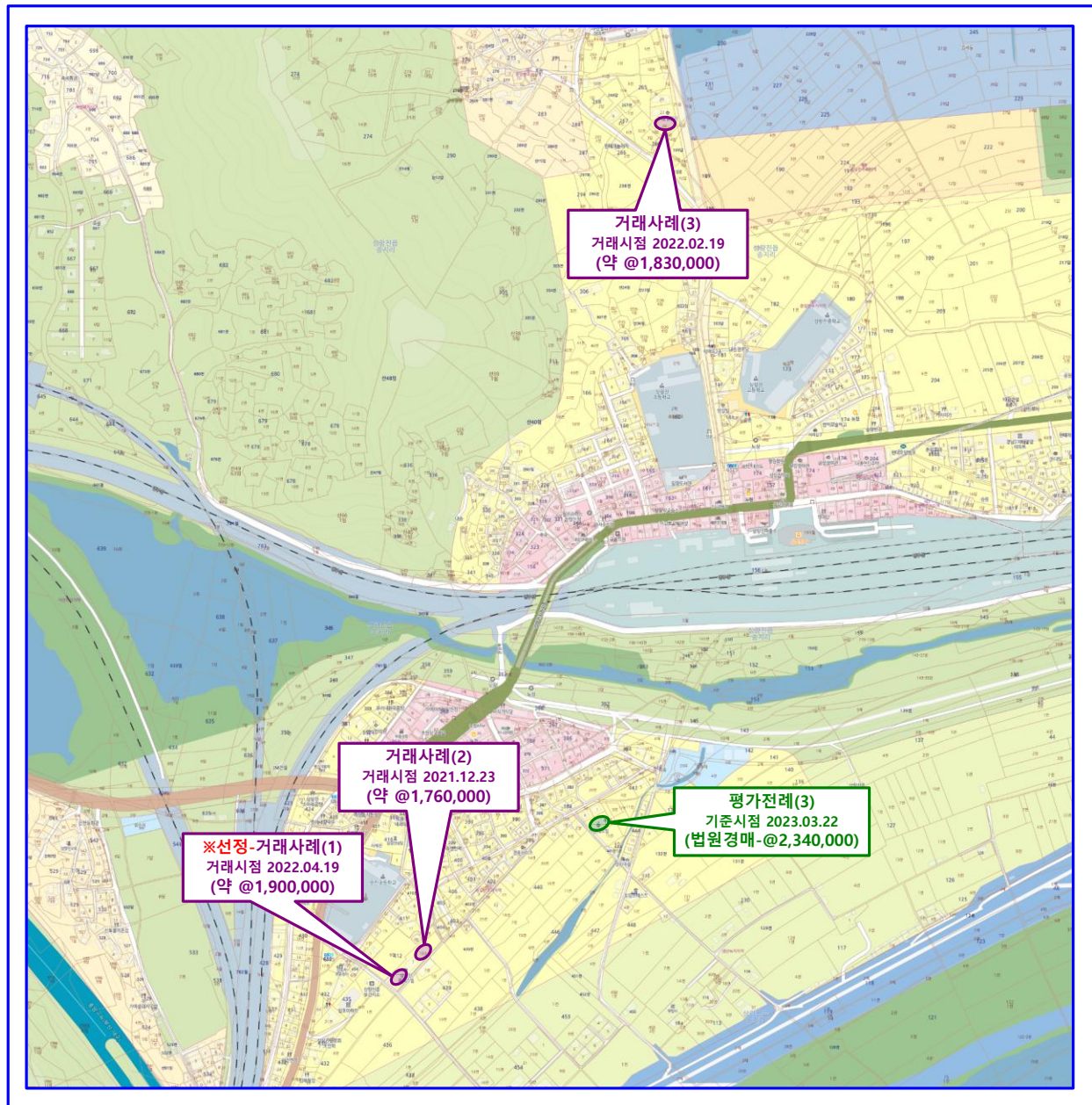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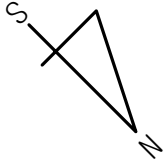
본건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42-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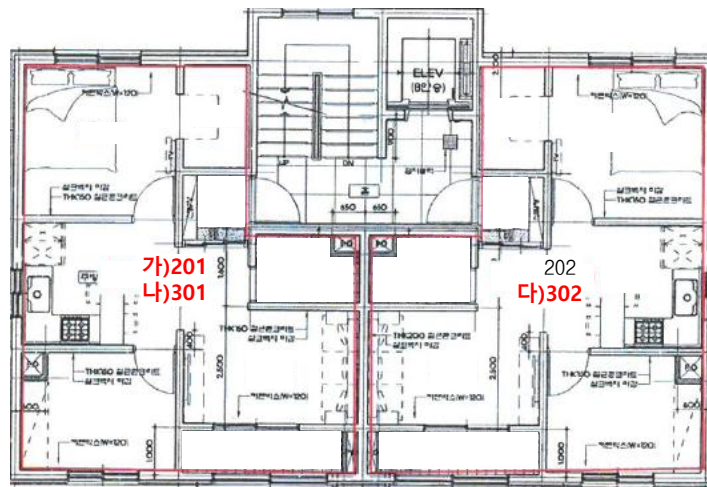
[본 건 명 : 현청 '영진빌리지2차'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외]



호 별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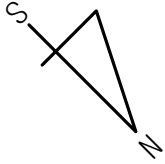
1 호 동 2, 3 층 호 별 배 치 도 (Non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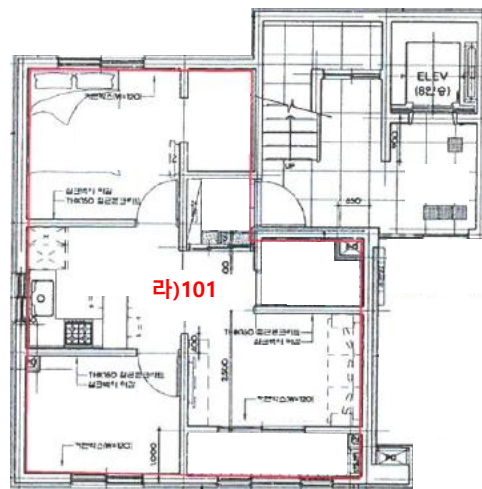
[1호동]

[현청 '영진빌리지2차' 제1호동 제2층 제201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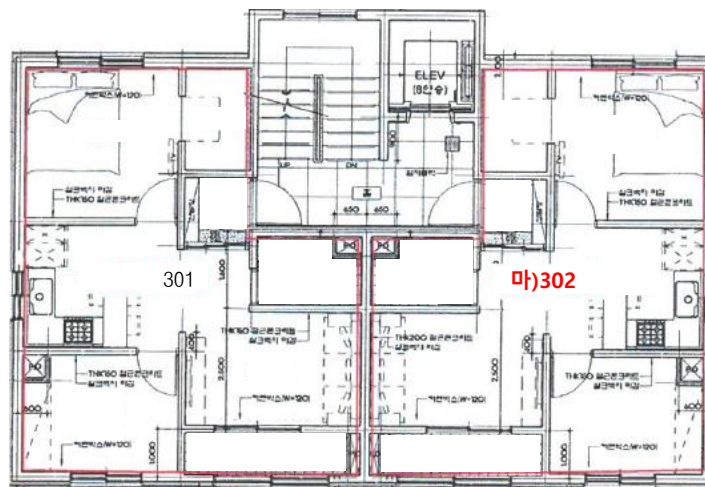
호 별 배 치 도



3 호 동 1, 3 층 호 별 배 치 도 (None Scale)



[3호동]



[현청 '영진빌리지2차' 제3호동 제1층 제101호 외]

사진용지



사 진 설 명	촬 영 장 소	촬 영 일 자
본건 전경	본건 북측 인근에서	2025. 03. 27.



사 진 설 명	촬 영 장 소	촬 영 일 자
본건 전경	본건 서측 인근에서	2025. 03. 27.

사 진 용 지



사 진 설 명	촬 영 장 소	촬 영 일 자
라) 내부	본건 내부에서	2025. 03. 27.



사 진 설 명	촬 영 장 소	촬 영 일 자
마) 내부	본건 내부에서	2025. 03. 27.